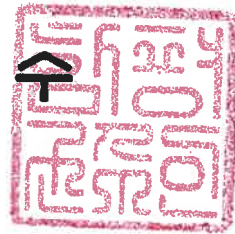


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

함평군에서 시행하는 「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」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등의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12월 20일

함 평 군



1. 사 업 개 요

- 가. 사 업 명 :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
- 나. 위 치 :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~ 대동면 향교리 일원
- 다. 사 업 량 : 도로 확포장 L=4.8km, B=10.0~11.0m
- 라. 사업기간 : 2020. ~ 2024.
- 마. 사업시행자 : 함평군수

2.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

- 가.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 일체(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별첨)
- 나. 보상 대상 세부 목록은 열람 장소에 비치

3. 열람기간 및 의견 제출 장소

- 가. 열람기간 : 2019. 12. 20. ~ 2020. 1. 3.(15일간)
- 나. 열람방법
 -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함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, 함평군 안전건설과 토목팀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열람
 - 함평군 홈페이지 주소 : <http://www.hampyeong.go.kr>(고시공고/입법예고)
- 다. 이의신청 : 보상 물건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함평군청 안전건설과 토목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·FAX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- 라. 이의신청 제출장소 : 함평군청 안전건설과

- 주 소 :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
- 연락처 : ☎061)320-1962, Fax.061)320-3594

마.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때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.

4. 보상시기 : 2020년 1월 3일 이후[개별통지 예정]

5. 보상방법 및 절차

가. 보상방법 :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

※ 당사자와 보상협의 성립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계좌입금

나. 보상절차

- 보상계획공고(열람 및 이의신청) → 감정평가사 추천 →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→ 보상협의(계약 및 소유권이전) → 보상금 지급(협의보상 완료) → 수용 재결(협의 불성립시) → 공탁

다.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

- 1)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할 수 있으며,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「감정평가업자 추천서」								
1. 추천업자 :								
2. 추천일 : 2019. . .								
연번	토지소재지	편입지번	편입면적(㎡)	소유자		인감날인	전화번호 (주택 및 휴대폰)	비고
				주소	성명			
※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본인의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날인하여야 하며,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.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								

- 2)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으며, 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·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합니다.

6. 기타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7. 기타사항

가.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세부 물건조서를 개별통지하고,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.

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안전건설과 토목팀(☎061)320-196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서

1.제 목		
2.당사자	성명 (명칭)	
	주소	
3.의 견		
4.기 타		
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. 2019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: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전화번호 : 함평군수 귀하 비고 :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		